

신구조문대비표  
「항공사업법 시행규칙」

항공사업법 시행규칙 [국토교통부령 제553호, 2018. 10. 31., 일부개정]	항공사업법 시행규칙 [국토교통부령 제578호, 2019. 1. 3., 일부개정]
<p>제43조(항공기취급업의 등록) ① 법 제44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및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(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사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43조(항공기취급업의 등록) ①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</p> <p>아. <u>도급(하도급을 포함한다)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의 범위와 책임, 수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4조(항공기취급업 변경신고) ① 법 제44조제1항 후단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4조(항공기취급업 변경신고) ①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도급(하도급을 포함한다)에 관한 사항의 변경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9조(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<u>항공기취급업</u>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,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</p>	<p>제49조(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 <u>항공레저스포츠사업</u>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

<p>④·⑤ (생 략)</p>	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4조(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보고는 반기별로 별지 제37호서식의 보고서를 <u>국토교통부장관</u>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.</p>	<p>제64조(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 - - - - - - - - - <u>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</u>- - - - - - - - - - .</p>
<p>제65조(운송약관의 신고)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(변경신고서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<u>국토교통부장관</u>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출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1.2. (생 략)</p>	<p>제65조(운송약관의 신고)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<u>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</u>- - - - - - - - - - .</p> <p>1.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8조(항공교통서비스 평가기준 등) ① 법 제63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평가기간 및 평가주기: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<u>그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</u>를 기준으로 <u>2년</u>마다 평가할 것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	<p>제68조(항공교통서비스 평가기준 등) ①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 - - - - - - - - - <u>1일부터</u> - - - - - - - - - - <u>1년</u>- - - - 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9조(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법 제64조제2항제7호에서 “<u>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</u>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p> <p>1.2. (생 략)</p> <p>3. <u>항공교통사업자의 주요 사업운영 실적</u></p> <p>4. <u>항공교통사업자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</u>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69조(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.</p> <p>1.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항공교통사업자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<u>항공교통량 및 이용객 현황에 관한 사항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71조의2(서류의 제출 등)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<u>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(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)하거나 자료를 제출(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해야 한다.</u></p> <p>② 법 제73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.[본조신설 2019.1.3]</p>